

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① 성 명		② 생년월일
③ 주 소		
(전화번호:)		

출자(투자) 금액 명세

④ 출자일 (투자일)	⑤ 투자 구분 (벤처 등, 조합 등)	⑥ 벤처 등 또는 조합 등의 명칭 (위탁회사· 벤처기업명· 투자신탁명)	⑦ 벤처 등 또는 조합 등의 사업자 등록번호	⑧ 금융기관 · 계좌번호	⑨ 출자금액 (투자금액)	⑩ 공제대상금액 [(⑨)×10(30,50, 70,100)%]	⑪ 한도액 (종합소득금액 ×50%)	⑫ 공제금액 (⑩·⑪ 중 적은 금액)
·	·							
·	·							
·	·							
계								

신청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4조제6항에 따라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 무 서 장 귀하

첨부서류	출자 또는 투자확인서(별지 제5호서식 부표)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1. ⑤ 투자 구분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'벤처 등' 으로, 같은 항 제1호,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'조합 등' 으로 적습니다.
2. ⑦ 벤처 등 또는 조합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투자 대상 '벤처 등' 또는 '조합 등' 의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3. ⑨ 출자금액(투자금액)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가.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: 출자액
 - 나.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: 투자액
 - 다.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: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
$$\text{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} \times \frac{\text{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}}{\text{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}}$$
 - 라.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: 투자액
 - 마. 창업·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: 투자액
 - 바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4조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: 투자액
4. ⑩ 공제대상금액란에는 2018.1.1. 이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제1항제3호·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%, 3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70%,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% (2015.1.1.~ 2017.12.31. 기간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%, 1천5백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50%,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%)를 적용하고, 그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%를 적용합니다.
5. ⑪ 한도액란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/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입니다.

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

출자자 (투자자)	① 성 명	② 생년월일	
	③ 주 소 (☎)		
제출처	<input type="checkbox"/> 원천징수의무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납세자 조합	④ 법인명(상호)	
		⑤ 대표자(성명)	⑥ 사업자등록번호
		⑦ 소재지(주소)	
	<input type="checkbox"/> 세무서장	⑧ 주소지관할서	세무서장
투자조합관리자등		⑨ 법인명(상호) (☎)	

출자(투자)금액명세

출자(투자)내역					벤처기업투자내역			
⑩ 출자일 (투자일)	투자조합(위탁회사) 또는 투자신탁				⑮ 출자금액 (투자금액)	⑯ 투자일	⑰ 투자기업명	⑱ 투자금액
	⑪ 투자 구분	⑫ 조합명 (위탁회사명) 또는 투자신탁명	⑬ 계좌 번호	⑭ 출자 총액				
· · ·						· · ·		
· · ·						· · ·		
계						계		

출자 또는 투자에 소득공제 변경 신청 내역

⑲ 출자(투자) 과세연도	⑳ 출자금액 (투자금액)	㉑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 변경 신청 과세연도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 확인자 (서명 또는 인)

투자조합관리자 등 귀하

작성 방법

1. ①~⑱란은 별지 제5호서식 부표1의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.
2. ⑲ 출자(투자) 과세연도란은 ⑩ 및 ⑯란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하고, ⑳ 출자금액(투자금액)란은 출자(투자) 과세연도에 출자(투자)한 금액 연간합계액을 기재합니다.
3. ㉑란은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